

22.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12호 2000. 1. 18

개 정 이 유

건축허가는 얻었으나 공사과정에서 시정하기 곤란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예정임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습재해지구 또는 환경정비지구를 의회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.
 - 나. 위법건축물 신고기간을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.
 - 다. 건축사가 작성하는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시책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취약지구개선사업 등으로 정함.
 - 라. 신고서식을 정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등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함.
 - 마.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 건축물을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30미터이내에 있는 건축물과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 있는 건축물 등으로 정함.
- ※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(www.moct.go.kr)법령정보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